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54 발의연월일: 2021. 6. 11.

발 의 자:정필모·임호선·주철현

김경만 · 송옥주 · 강선우

김정호 · 김주영 · 김성주

김승원 • 이수진॥ • 노웅래

정일영 · 황운하 · 김원이

윤건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제출 기한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연구개발 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 임(안 제19조).

법률 제 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7조의 규정에"를 "제7조에"로, "지체없이"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19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과학기술정보	대한 제출의무)
통신부장관은 <u>제7조의 규정에</u>	<u>제7조에</u>
따라 실시한 특정평가 및 상위	
평가의 결과를 <u>지체없이</u> 국회	<u>평</u> 가가 종료된 날부터 <u>30</u>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일 이내에
한다.	